

삼성이앤에이 주식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 호)

본 회사는 삼성이앤에이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 SAMSUNG E&A CO., LTD.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술용역 및 산업기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2. 산업설비용역의 국산화촉진과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사업
3. 산업설비, 건물, 구축물, 토목시설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에 관한 사업
4. 기술개발과 축적에 관한 사업
5.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
6. 산업기계제작 및 판매
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8. 도·소매업
9. 중기의 임대 및 정비업
10. 해외건설업 및 해외건설용역업
11. 토건, 포장, 철강재설치, 준설 및 조경 공사업
12.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13. 무역업 및 무역중개업
14. 소방설비공사업
15. 특정열기자재 시공업 및 가스시설 시공업
16.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의 개발, 제조, 운송, 수출입, 저장, 판매 등을 포함하는 사업 및 관련기술사업, 발전관련사업
17. 주택의 건설, 매매 및 임대사업
18.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19. 스포츠시설과 대중오락시설의 건설 및 운영
20. 군납업
21.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환경영향평가대행업, 일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토양정화업
22. 인터넷 관련사업
23. 종합책임감리전문업

24. 해수담수화설비, 상하수도설비 등 물 관련설비의 제조, 공사, 판매 및 운영을 포함하는 사업
25. 수처리 촉매, 합성수지, 기타 화학제품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26. 전 각항에 관련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
27. 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과 지점)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지점, 지사,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en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및 사 채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주로 한다.

제6조(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십일만일천칠백사십사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액면가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액면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1. 본 회사의 주식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를 삼백오십만주로 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 이상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3항에서 정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의2(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본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회의 의결로 주식예약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라. 제10조의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마. 제10조의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1조 제6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일반공모증자)

1.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

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사후 승인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2019.3.21.>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한다.
2.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 제6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육백억원은 보통주식, 사백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가격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 제6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사백억원은 보통주식, 삼백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6조(사채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7조(소집 및 통지)

1. 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심의할 수 있다.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써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단,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 대리행사의 순위에 따른다. 이사 전원이 유고 시에는 출석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갈음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 개로 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사분의 일 이상의 수로 한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위임장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대리권을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상황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제27조(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8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을 선정할 수 있다.
4.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사의 선임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사외이사)

1. 사외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8조의2(이사의 보선)

1.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본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4.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본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의한다.

제30조의2(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가. 경영위원회
 - 나. 감사위원회
 -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라.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3(경영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3.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의4(감사위원회)

1. 이사회는 결의로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의5(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이사회는 결의로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이사회 의장)

이사회는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이사회 결의)

1.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써 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이사회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업무규정의 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업무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의4(내부거래 등의 승인)

1.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나.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규정된 자임)과 상법 제542조의9의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동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거래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의 경업 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삭제<2010.3.19.>

제35조의2 삭제<2010.3.19.>

제35조의3 삭제<2010.3.19.>

제36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그 한도를 정한다.

제37조(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삭제<2010.3.19.>

제 5 장 계 산

제39조(영업연도 및 결산)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 12월 말일의 일 회로 한다.

제40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제41조(이익배당금)

1.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질권등록자에게 지급한다.
2. 이익배당금은 지급확약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된다.
3.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4.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5.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6. 본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7. 제1항(정기배당) 및 제6항(중간배당)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2.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서기 1978년 7월 12일에 개최된 유한회사 코리아엔지니어링의 임시사원총회에서 본 정관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원 전원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일번지육십호
주식회사 한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함병소

日本國東京都千代田區霞が 關三丁目貳番地五號
國際엔지니어링주식회사 代表取締役 松瀬邦彦

부 칙

이 정관은 197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4항(이사의 선임중 집중투표제) 및 제28조의2 제2항(이사의 보선 중 집중투표제)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